

D O W O N S M A R T C I T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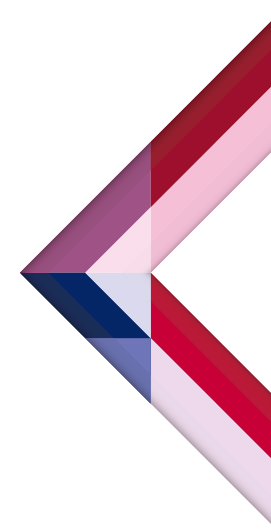


도원역 스마트시티 | SMART CITY

주택홍보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85
아파트 59㎡ / 84㎡ 총 585세대(예정)

www.도원역스마트시티.com

032-866-0415



[가칭] 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도원역 스마트시티
SMART CITY

[가칭] 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조합원모집 개요

-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 영 제21조)
- 「주택법 제11조의3」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를 수리함.

[신고수리일자 : 2021년 08월 18일(수),

신고수리번호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27967호]

- 본 주택의 최초 조합원 모집 공고일은 2021년 08월 19일(목)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103-1번지 일대)에서 (가칭)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자격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가칭)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계약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주체, 위치 및 면적, 토지확보, 주택건설 계획

I 모집주체

구 분		고유/등록/법인번호	상 호(성명)	주 소
모집주체	발기인 주체	216-82-67179	(가칭)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순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13, 2층(송의동)
	업무대행사	인천-주택2021-0083	주식회사 히로코리아 (대표: 김재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85, 3층(주안동)
자금관리대리사무(신탁사)		110111-286741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I 사업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103-1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5,859.50㎡	기반시설: 3,048.00㎡(도로, 녹지, 공원 등)
건축계획	건 축 면 적	5,793.89㎡	
	연 면 적	125,787.96㎡ (지상: 90,687.96㎡ / 지하: 35,100.00㎡)	
	건 폐 율 / 용 적 률	45.22% / 699.44%	
	규 모	공동주택 6개동(지하4층, 지상40층) 및 기반 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립세대수(예정)	총 585세대 (59㎡A타입 198세대, 59㎡B타입 99세대, 84㎡A타입 96세대, 84㎡S1타입 128세대, 84㎡S2타입 64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상기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위치 및 대지면적은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 사무실 및 주택홍보관에 비치 또는 전시되어 있는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

구 분	주택건설대지의 현황		토지사용권원 확보현황		
	공동주택 대지면적(㎡)	비율(%)	확보면적(㎡)	확보율(%)	비 고
사 유 지	11,684.97	73.68	7,994.41	68.41	사유지 대비
국공유지	4,174.53	26.32	0	0	(조합설립인가 후 매입)
합 계	15,859.50	100	7,994.41	50.40	전체부지 대비

※ 상기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사용권원확보(토지사용승낙) 현황으로 토지소유권확보가 아님을 주의 바랍니다.
※ 조합설립 이전까지 본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95% 이상 토지매매계약 및 토지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기타 미매입 토지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하여 100% 토지를 확보할 계획임.



※ 상기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작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의 색채 및 디자인은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토지 상세현황 (주택건설대지)

(면적단위: ㎡)

연번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1	102-2	철	1,015.0	996.1	64	103-43	대	96.2	96.2	127	109-478	대	63.0	63.0
2	102-4	대	202.0	202.0	65	103-44	대	96.2	96.2	128	109-479	도	30.0	30.0
3	102-6	대	155.0	155.0	66	103-45	대	49.9	49.9	129	109-480	대	46.0	46.0
4	102-7	대	43.0	43.0	67	103-46	도	103.1	103.1	130	109-481	대	60.0	60.0
5	102-8	대	145.0	145.0	68	103-47	대	32.1	32.1	131	109-484	대	236.0	235.2
6	102-9	전	453.0	453.0	69	103-48	대	27.4	27.4	132	109-485	대	2.0	2.0
7	102-10	전	46.0	46.0	70	103-49	대	103.1	103.1	133	109-487	대	55.0	55.0
8	102-11	도	231.0	231.0	71	103-50	도	76.4	76.4	134	109-488	대	76.0	76.0
9	102-12	대	3.0	3.0	72	103-53	대	99.7	99.7	135	109-489	대	120.0	120.0
10	102-13	도	693.0	5.7	73	103-56	대	49.2	49.2	136	109-493	대	10.0	9.7
11	102-16	대	53.0	53.0	74	103-58	도	82.0	82.0	137	109-495	대	11.0	11.0
12	102-18	대	83.0	83.0	75	103-59	대	27.3	27.3	138	109-919	대	16.0	16.0
13	102-19	도	152.0	152.0	76	103-60	대	62.2	62.2	139	109-920	대	60.0	60.0
14	102-20	대	112.0	112.0	77	103-61	대	71.0	71.0	140	109-1013	대	1.0	1.0
15	102-22	대	159.0	159.0	78	103-62	도	83.4	83.4	141	109-1014	대	1.0	1.0
16	102-23	대	99.0	99.0	79	103-63	대	35.0	35.0	142	109-1023	대	3.0	3.0
17	102-24	대	280.0	280.0	80	103-64	대	91.0	91.0	143	109-1025	전	28.0	0.9
18	102-25	대	60.0	60.0	81	103-65	대	78.0	78.0	144	109-1121	도	4.0	4.0
19	102-26	대	70.0	70.0	82	103-66	대	12.6	12.6	145	109-1122	대	2.0	2.0
20	102-27	대	665.0	665.0	83	103-67	대	76.0	76.0	146	109-1123	도	1.0	1.0
21	102-28	대	134.0	134.0	84	103-68	대	121.5	121.5	147	109-1124	도	11.0	8.1
22	102-31	대	59.0	59.0	85	103-69	대	101.2	101.2	148	109-1125	대	5.0	3.4
23	102-45	대	59.0	14.0	86	103-70	대	76.5	76.5	149	109-1126	도	18.0	14.0
24	102-47	대	52.0	52.0	87	103-71	대	6.8	6.8	150	109-1127	대	5.0	4.4
25	102-48	대	7.0	7.0	88	109-27	임	2.0	2.0	151	109-1128	도	21.0	12.6
26	103-1	대	142.0	142.0	89	109-28	대	36.0	36.0	152	109-1136	도	5.0	3.1
27	103-2	대	96.2	96.2	90	109-36	대	122.0	122.0	153	109-1137	도	9.0	2.2
28	103-3	대	52.9	52.9	91	109-186	대	20.0	2.8	154	109-1271	도	13.0	13.0
29	103-4	대	56.8	56.8	92	109-191	대	23.0	0.7	155	109-1272	도	4.0	4.0
30	103-5	대	106.4	106.4	93	109-192	대	4.0	1.4	156	109-1326	대	43.0	43.0
31	103-6	대	280.3	280.3	94	109-279	대	25.0	25.0	157	109-1343	대	1.0	1.0
32	103-7	대	162.7	162.7	95	109-280	대	80.0	80.0	158	109-1344	대	26.0	26.0
33	103-8	대	149.1	149.1	96	109-281	대	43.0	43.0	159	109-1345	도	4.0	4.0
34	103-9	대	113.4	113.4	97	109-282	대	40.0	40.0	160	109-1407	대	37.0	37.0
35	103-10	대	127.7	127.7	98	109-283	대	23.0	23.0	161	111-1	대	325.0	325.0
36	103-11	대	54.5	54.5	99	109-284	대	56.0	56.0	162	111-4	대	152.0	152.0
37	103-12	대	114.0	114.0	100	109-285	대	30.0	30.0	163	111-5	대	92.0	92.0
38	103-13	대	152.1	152.1	101	109-286	대	20.0	20.0	164	111-6	도	495.0	5.6
39	103-14	대	306.1	306.1	102	109-287	대	60.0	60.0	165	111-7	대	28.0	28.0
40	103-15	대	175.5	175.5	103	109-288	대	40.0	40.0	166	111-8	대	3.0	3.0
41	103-16	대	115.7	115.7	104	109-289	대	72.0	72.0	167	111-10	대	53.0	53.0
42	103-17	대	218.8	218.8	105	109-290	대	152.0	151.2	168	111-11	대	178.0	178.0
43	103-18	대	89.9	89.9	106	109-291	대	40.0	40.0	169	111-14	대	26.0	26.0
44	103-19	대	129.6	129.6	107	109-292	임	40.0	40.0	170	111-18	대	132.0	132.0
45	103-20	대	124.1	124.1	108	109-293	대	109.0	109.0	171	111-19	대	89.0	89.0
46	103-21	대	41.6	41.6	109	109-294	대	93.0	93.0	172	111-20	대	46.0	46.0
47	103-22	대	49.2	49.2	110	109-295	대	83.0	83.0	173	111-21	대	120.0	120.0
48	103-23	대	61.2	61.2	111	109-296	대	67.0	67.0	174	111-22	대	177.0	177.0
49	103-24	대	165.9	165.9	112	109-297	대	20.0	20.0	175	112-4	대	46.0	46.0
50	103-25	대	116.0	116.0	113	109-298	대	18.0	18.0	176	112-5	대	26.0	26.0
51	103-26	대	125.9	125.9	114	109-299	대	73.0	73.0	177	112-6	대	114.0	114.0
52	103-27	대	39.0	39.0	115	109-300	대	40.0	40.0	178	112-7	대	89.0	89.0
53	103-29	대	79.0	79.0	116	109-301	대	50.0	50.0	179	112-8	대	96.0	96.0
54	103-30	도	38.0	38.0	117	109-302	도	16.0	16.0	180	114-63	대	79.0	79.0
55	103-32	대	80.3	80.3	118	109-304	대	56.0	56.0	181	114-113	대	10.0	4.7
56	103-33	대	106.8	106.8	119	109-438	대	73.0	73.0	182	114-114	대	18.0	18.0
57	103-34	대	120.9	120.9	120	109-439	대	40.0	40.0	183	130	도	8,403.6	124.9
58	103-36	대	104.5	104.5	121	109-441	대	40.0	40.0	184	457-3	대	324.0	324.0
59	103-37	대	69.8	69.8	122	109-442	대	7.0	7.0	185	457-7	대	1.0	1.0
60	103-38	대	20.8	20.8	123	109-474	대	106.0	106.0	186	457-11	철	10.0	10.0
61	103-39	대	89.1	89.1	124	109-475	대	125.0	117.5	187	457-12	철	56.0	56.0
62	103-40	대	116.7	116.7	125	109-476	대	142.0	142.0	188	457-15	대	112.0	112.0
63	103-42	대	24.1	24.1	126	109-477	대	69.0	69.0	189	457-16	대	102.0	102.0
합 계(189필지) 15,859.5														

※ 상기 주택건설대지 필지는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필지 상에 있는 일부 제한물건(가처분, 압류, 지상권 등)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말소할 계획임.
※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 사무실 및 주택홍보관에 비치 또는 전시되어 있는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구 분	59㎡A	59㎡B	84㎡A	84㎡S1	84㎡S2	합계	건설예정기간	착공 후 40개월
세대수(예정)	198	99	96	128	64	585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모집 세대 관련 및 복리/부대시설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1차조합원]

구 분	59㎡A	59㎡B	84㎡A	84㎡S1	84㎡S2	합계	공개모집기간
모집세대수	159	79	77	102	51	468	2021년 08월 19일 ~ 2023년 08월 18일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일반(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주택타입	세대별 주택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		
59㎡A	59.84	28.06	87.90	5.05	30.36	123.32	12.0432㎡
59㎡B	59.55	28.04	87.59	5.04	30.22	122.84	11.9848㎡
84㎡A	84.74	38.47	123.21	7.08	43.00	173.29	17.0544㎡
84㎡S1	84.82	38.43	123.25	7.09	43.04	173.38	17.0705㎡
84㎡S2	84.82	38.43	123.25	7.09	43.04	173.38	17.0705㎡

※ 상기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평 ÷ 3.3058)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동의 공용부분이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관련 내용은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40F	3901	3902	3903	3901	3902	3903	3901	3902	3903	4001	4002	4003	4001	4002	4003	4001	4002	4003
39F	3801	3802	3803	3801	3802	3803	3801	3802	3803	3801	3802	3803	3801	3802	3803	3801	3802	3803
38F	3701	3702	3703	3701	3702	3703	3701	3702	3703	3701	3702	3703	3701	3702	3703	3701	3702	3703
37F	3601	3602	3603	3601	3602	3603	3601	3602	3603	3601	3602	3603	3601	3602	3603	3601	3602	3603
36F	3501	3502	3503	3501	3502	3503	3501	3502	3503	3501	3502	3503	3501	3502	3503	3501	3502	3503
35F	3401	3402	3403	3401	3402	3403	3401	3402	3403	3401	3402	3403	3401	3402	3403	3401	3402	3403
34F	3301	3302	3303	3301	3302	3303	3301	3302	3303	3301	3302	3303	3301	3302	3303	3301	3302	3303
33F	3201	3202	3203	3201	3202	3203	3201	3202	3203	3201	3202	3203	3201	3202	3203	3201	3202	3203
32F	3101	3102	3103	3101	3102	3103	3101	3102	3103	3101	3102	3103	3101	3102	3103	3101	3102	3103
31F	3001	3002	3003	3001	3002	3003	3001	3002	3003	3001	3002	3003	3001	3002	3003	3001	3002	3003
30F	2901	2902	2903	2901	2902	2903	2901	2902	2903	2901	2902	2903	2901	2902	2903	2901	2902	2903
29F	2801	2802	2803	2801	2802	2803	2801	2802	2803	2801	2802	2803	2801	2802	2803	2801	2802	2803
28F	2701	2702	2703	2701	2702	2703	2701	2702	2703	2701	2702	2703	2701	2702	2703	2701	2702	2703
27F	2601	2602	2603	2601	2602	2603	2601	2602	2603	2601	2602	2603	2601	2602	2603	2601	2602	2603
26F	2501	2502	2503	2501	2502	2503	2501	2502	2503	2501	2502	2503	2501	2502	2503	2501	2502	2503
25F	2401	2402	2403	2401	2402	2403	2401	2402	2403	2401	2402	2403	2401	2402	2403	2401	2402	2403
24F	2301	2302	2303	2301	2302	2303	2301	2302	2303	2301	2302	2303	2301	2302	2303	2301	2302	2303
23F	2201	2202	2203	2201	2202	2203	2201	2202	2203	2201	2202	2203	2201	2202	2203	2201	2202	2203
22F	2101	2102	2103	2101	2102	2103	2101	2102	2103	2101	2102	2103	2101	2102	2103	2101	2102	2103
21F																		
20F																		
19F	1901	1902	1903	1901	1902	1903	1901	1902	1903	1901	1902	1903	1901	1902	1903	1901	1902	1903
18F	1801	1802	1803	1801	1802	1803	1801	1802	1803	1801	1802	1803	1801	1802	1803	1801	1802	1803
17F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6F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5F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4F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3F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2F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1F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0F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9F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8F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7F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6F																		
5F																		
4F																		
3F																		
2F																		
1F																		
타입	84S2	84A	84S2	84S1	84A	84S1	84S1	84A	84S1	59A	59B	59A	59A	59B	59A	59A	59B	59A
호수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 상기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의 색채 및 디자인은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모집 관련 사항

I 조합원 신청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신 청 자 격	「주택법시행령」 제21조제①항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호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설명: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신 청 시 구 비 서 류	1.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2. 계약금 입금확인증(또는 이체확인서류) 1부 3. 인감도장 날인(또는 본인서명) 지참 4. 인감증명서(본인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통 5. 주민등록등본(상세, 주민번호 모두표기) 2통 6. 주민등록초본(상세, 주민번호 모두표기) 2통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모두표기) 2통 8. [주택 소유 시] 소유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통 9.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주민번호 모두표기) 2통 [제3자 대리계약 규정] 본인 외에는 전부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대리인 계약 시, 계약자 본인의 상기 구비서류 및 준비물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및 준비하여야 함. 1.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위임용) 1통 2. 위임장(주택홍보관 비치) 1부 3. 대리인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신 청 일 시	모집공고일부터 ~ 조합원 모집 완료 시까지 (10:00 ~ 18:00)
신 청 장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85, 2층 (가칭)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 032-866-0415~6]

※ 상기 내용 외 신청자의 세부적인 신청자격 및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제52조, 제53조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은 조합가입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하며,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I 가입신청 조합원의 추첨방법 및 당첨자 발표

▶ 공개모집기간 종료 후 각 군별 경쟁률이 [1:1] 이하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각 군별 경쟁률이 [1:1] 초과 시 모집 마감 후 14일 이내에 추첨 일시와 장소를 추첨 대상자에게 개별 서면과 전화로 통지 후 각 군별 조합원을 추첨 후 계약하며, 조합원 확정은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동·호수의 지정(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배정시기	동·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후 총회에서 협의
배정방법	총회 의결사항에 따름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원가입 계약체결이 완료되고 납부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합니다.

▶ 동·호수 및 배치는 사업계획승인 후 확정되며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 예정 세대수보다 감소 시 조합원 가입순위 및 조합원 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조합원을 우선으로 최종 결정되며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 모집 후 남은 잔여세대는 일반(임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조합이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 동·호수 지정에 따라 분담금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조합이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I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주택법 상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 확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
-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 계약의 취소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중도금 등 분담금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사업승인 이전은 1회)
- 부적법한 전매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 “본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때
-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원분담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 원리금상환을 지연함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시공사에게 대출 원리금상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계약에 정한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 시행을 지연,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조합원 가입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 의하여 “을”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심사에서 “을”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 “을”이 사망하거나 인·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분담금을 기일 내에 성실히 납부하고 본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절차

- 조합원 가입 계약일을 포함하여 30일(공휴일 포함)이내 계약해지(조합원 탈퇴)를 요청할 시에는 납부한 금액 전부를 환불하여 주기로 한다.
- 조합원 가입 후 직권 제명되거나 기타 사유로 임의 탈퇴한 경우, 조합창립총회 이전에는 기 납입금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창립총회 이후에는 기 납입금 중 계약금(1차)과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기 납입금 중 계약금(1차,2차)과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조합 이사회를 거쳐 환불기로 하되 그 행정절차는 “갑”이 정한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 환불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분담금에 대하여 “갑” 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발생 시 그에 대한 이자지불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환불일까지 미납된 분담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 대출이자와 그 연체료를 환불금에서 공제키로 하고,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기타 계약해지(또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환불 금액 및 절차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9조제3항을 기준으로 한다.
-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을 발생 한다.
-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계약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자금대리 사무사)의 장에게 반환요청 후,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4 계약금 · 분담금 납부관련

I 계약금 · 분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및 조합자금관리

(금액단위: 천원)

구분	층(F)	군	분담금 총액	자납(10%)		자납(10%)	자납(10%)	중도금대출(50%)					자납(20%)
				계약금1차	계약금2차	계약금3차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중도금5차	중도금6차	잔금
				계약 시	계약후1개월	설립인가 전	사업승인 전	착공 시	착공후6개월	착공후12개월	착공후18개월	착공후24개월	입주 전
59m ² A 59m ² B	1~10	가	247,000	5,000	19,700	24,700	24,700	24,700	24,700	24,700	24,700	24,700	49,400
	11~18	나	257,400	5,000	20,740	25,740	25,740	25,740	25,740	25,740	25,740	25,740	51,480
	19~21	다	265,200	5,000	21,520	26,520	26,520	26,520	26,520	26,520	26,520	26,520	53,040
	22~28	라	273,000	5,000	22,300	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54,600
	29~30	마	280,800	5,000	23,080	28,050	28,050	28,050	28,050	28,050	28,050	28,050	56,160
	31~36	바	288,600	5,000	23,860	28,860	28,860	28,860	28,860	28,860	28,860	28,860	57,720
	37~40	사	299,000	5,000	24,9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59,800
84m ² A	1~10	가	351,500	10,000	25,150	35,150	35,150	35,150	35,150	35,150	35,150	35,150	70,300
	11~18	나	366,300	10,000	26,630	36,630	36,630	36,630	36,630	36,630	36,630	36,630	73,260
	19~21	다	377,400	10,000	27,740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75,480
	22~28	라	388,500	10,000	28,850	38,850	38,850	38,850	38,850	38,850	38,850	38,850	77,700
	29~30	마	399,600	10,000	29,960	39,960	39,960	39,960	39,960	39,960	39,960	39,960	79,920
	31~36	바	410,700	10,000	31,070	41,070	41,070	41,070	41,070	41,070	41,070	41,070	82,140
	37~39	사	425,500	10,000	32,550	42,550	42,550	42,550	42,550	42,550	42,550	42,550	85,100
84m ² S1 84m ² S2	1~10	가	366,300	10,000	26,630	36,630	36,630	36,630	36,630	36,630	36,630	36,630	73,260
	11~18	나	384,800	10,000	28,480	38,480	38,480	38,480	38,480	38,480	38,480	38,480	76,960
	19~21	다	395,900	10,000	29,590	39,590	39,590	39,590	39,590	39,590	39,590	39,590	79,180
	22~28	라	407,000	10,000	30,7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81,400
	29~30	마	418,100	10,000	31,810	41,810	41,810	41,810	41,810	41,810	41,810	41,810	83,620
	31~36	바	429,200	10,000	32,920	42,920	42,920	42,920	42,920	42,920	42,920	42,920	85,840
	37~39	사	440,300	10,000	34,030	44,030	44,030	44,030	44,030	44,030	44,030	44,030	88,060

- ※ 상기 조합원분담금은 1차조합원 모집 기준이며, 2차조합원 모집 시 조합원분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납부일정은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조합업무대행비는 세대당 일금 이천만원(₩20,000,000원)으로 하며, 상기 납부금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계약 시 납부)
- ※ 상기 조합원분담금에는 중도금 대출이자 및 추가옵션 품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전 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됨으로 발코니 확장은 “을”의 선택사항 의무계약으로 하되 확장공사비는 상기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조합원분담금은 타입별 기준층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향후 조합총회를 통해 동별, 층별, 항별, 호별 기타 세대가치를 고려한 차등적용 공급금액으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확정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 ※ 조합원분담금은 가격지수를 면적별 구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변동이 발생 시에는 조합 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한 납부 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서 상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모집공고상 동별, 군별 표시층과 다르게 변동되어 동·호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및 사무실)은 상기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일반(임의) 분양할 예정입니다.
- ※ 자금의 관리는 자금관리대리사무(신탁사) 계약에 따라 자금 일체를 자금관리대리사무사(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서 관리합니다.
- ※ 본 납부일정은 조합 홈페이지, 카페, 문자, 서면 등으로 통보하고,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I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자금관리 주체		[상 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대표자] 권준명
자금관리 계획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거하여 자금 일체를 신탁사(무궁화신탁)에서 관리
계약번호	가입계약금	우리은행 1005-504-194005 [예금주: (주)무궁화신탁]
	조합원분담금	우리은행 1005-904-196611 [예금주: (주)무궁화신탁]
	업무대행비	우리은행 1005-104-203892 [예금주: (주)무궁화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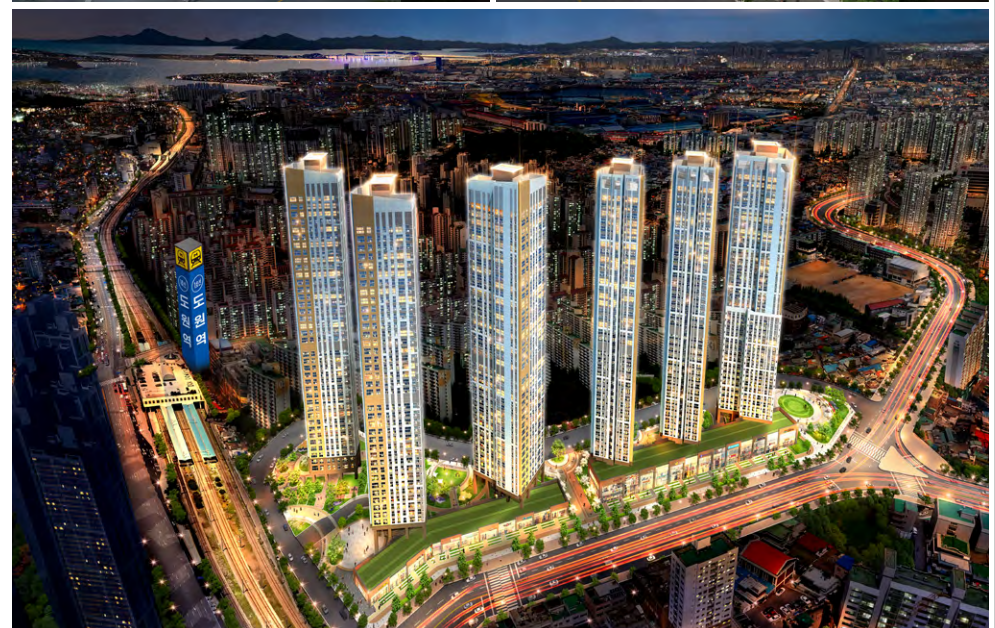
- ▶ 가입계약금 및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 각자가 계약자 성명으로 직접 납부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무궁화신탁)”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계좌 이외에 입금된 청약금 및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사업주체의 통지로만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를 모집공고 상의 가입계약금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금원은 사업주체의 확인을 통해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관리계좌로 임의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일정(예정일)

I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 착공예정일 · 입주예정일

구 분	조합설립인가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 예정일	준공(입주) 예정일
예정일	2022년 2월	2022년 8월	2022년 10월	2025년 12월

- ※ 상기 사업일정은 예정일이며, 조합원 모집 및 관할관청 건축심의 등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 세부적인 사업일정은 주택홍보관 내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조합총회 시 총회자료집에 별도 안내됩니다.



- ※ 상기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건물외부의 색채 및 디자인은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및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I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 조합원은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①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②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③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단, 피 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기로 하며, 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 조합의 규약준수,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및 본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II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 ▶ 본 사업 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주택홍보관 내의 각종 팜플렛 및 전단지, 안내문, 인터넷광고,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 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관련된 인·허가 완료 후 확정합니다.
-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입니다.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니며 최종적인 사항은 관련된 인·허가 완료 후 확정합니다.
- ▶ 동·호수 지정 및 일반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되며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비,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으로 인하여)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 조합원 모집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홍보 시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주택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팜플렛 및 전단지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발코니 확장비 별도)
- ▶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절하게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준공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의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기로 하나, 소수점 이하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으로 인한 증감 시에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사업지 주변 도로차선 및 교통체계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기관의 추진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또한 인쇄과정상 제작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유념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및 동 번호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지경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제작용물에 사용된 이미지,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조합원 모집자료 상의 평면도와 아이소메트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모집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각종 인쇄물 및 모형도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부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공기준은 인·허가 사업 승인도서와 특화디자인(지자체 토탈디자인 심의도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후 불법 구조물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조합총회 또는 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건축개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외부창호는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이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홍보관은 조합원 모집완료 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주택홍보관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합니다.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유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의사항

-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미 확보된 상태이며, 조합설립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15%이상) 및 토지사용권원 (80%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토지소유권(9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 토지이용 동의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 아파트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 사업대상부지의 여건에 따라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거나 개발규제(층수, 문화재 등)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예상층수, 예상세대수)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은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의 변경, 사업 장기화 등)에서 추가분담금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
SMART
FUTURE
—

미추홀 신주거 대단지의 관문 꿈꾸던 미래가치의 맨 앞

인천 변화의 중심, 미추홀의 가슴 설레는 미래가 찾아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특별한 가치와 앞선 주거문화,
도원역 스마트시티가 시작합니다.

도원역 스마트시티 | SMART CITY

주택홍보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85, 2층(주안동) 문의 | 032-866-0415

사업주체 (가칭)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 금융주관사 카카오페이증권 신탁사  무궁화신탁 MUGUNGHWA TRUST CO., LTD. 예정시공사  동원건설

※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 및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